

봉사활동 운영 계획

인성복지부



두일중학교
DUIL

<http://www.duil.ms.kr>

봉사활동 운영 계획

1. 봉사활동의 기본 방향

- 가. 학교 봉사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시간 등에 배정하여 실제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 나. 효율적이며 진정한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하며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면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한다.

2. 방침

- 가. 학년 초 학생봉사활동에 관한 사전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고 봉사활동시간에 포함한다.
- 나. 학생봉사활동은 연간 5시간 내외를 실시하도록 권장한다.
- 다.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의 봉사활동은 1학년 5시간, 2학년 5시간, 3학년 3시간을 편성하여 지도하고, 개인별보다는 단체별(학년, 학급, 그룹)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 라. 봉사활동 확인서는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명의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부득이한 경우 실무담당자의 실인도 인정한다. 실인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는 담임교사의 확인에 의해 「봉사활동추진위원장」의 실인으로 조치할 수 있다.)
- 마.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같은 종류의 봉사를 지속적으로 한 경우는 학기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기록한다.)
- 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에 의한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할 수 없다.
- 사. 봉사활동의 적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단순한 선행활동을 봉사활동으로 기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아. 시·도간 전학 시 타 시·도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봉사활동실적은 우리 도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적교의 실적을 인정한다.
- 자. 협의가 필요할 경우 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구분	역할	직급	성명
위원장	학생봉사활동 업무를 지도·감독	교감	최00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여 학생봉사활동 업무 총괄	봉사활동 담당부장	서00
계획위원	학생들이 전 영역에 걸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년별 단계에 맞는 활동계획 수립	봉사활동 담당자	박00
실행위원	봉사활동 영역별·학년별 발달단계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1학년부장	이00
실행위원		2학년부장	임00
실행위원		3학년부장	김00
평가위원	평가계획 수립, 평가방법 연구, 결과분석	교무기획부장	최00

3. 봉사활동 계획

가. 교육 과정 내 봉사활동 운영 계획(5시간)

영역	일자(요일)	세부 활동 내용	운영 교시	학년	활동 시수	임장 지도	학기별 소계	연간 총계
봉사 활동	3월2일(수)	봉사활동 소양교육	4	전학년	1		1학기 3	5
	5월3일(화)	환경보호활동	3	전학년	1			
	7월20일(수)	환경보호활동	1	전학년	1	담임		
	8월17일(수)	환경보호활동	1	전학년	1		2학기 2	
	10월25일(화)	환경보호활동	7	3학년	1	담임		
	12월30일(금)	환경보호활동	6	1,2학년	1	담임		

나. 교육 과정 외 학교장 인정 연간 봉사활동 계획

활동 영역	세부 활동 내용	참가학생	시기	제한시간 (학기)	지도교사 (부서)	비고
이웃 돕기 활동	과학실, 복도 환경정리 및 실험 도우미	과학실 실험 도우미 10명 이내	연중	학기별 4시간 이내	한00 (융합과학부)	담당학생
	급식 배식 도우미	각 학급 담당 학생	연중	학기별 5시간 이내	영영사님 (급식실)	담당학생
	도서관 도서 정리	도서부 40명 이내	연중	5시간 이내	박00 (교육정보부)	담당학생
	방송 및 행사 진행 도우미	방송반 도우미 학생	연중	학기별 5시간 이내	이00 (융합과학부)	담당학생
	생활 관리 도우미(휴대폰관리,방역)	학급별 2명 이내	연중	학기별 5시간 이내	해당 학년부 봉사담당자	담당학생
	자율적 토래학습 멘토링	학급별 3명 이내	연중	학기별 5시간 이내	박00 (교수학습부)	담당학생
	체육 행사 도우미	40명 이내	행사 기간	학기별 5시간 이내	김00 (문화예체능부)	담당학생
	학교 행사 도우미	학생자치회	연중	학기별 5시간 이내	권00 (혁신자치교육부)	담당학생
	학급 에너지 절약 도우미 (출석부관리,문단속, 학급기자재관리 포함)	학급별 1명	연중	학기별 5시간 이내	해당 학년부 봉사담당자	담당학생
	학생상담활동 및 Wee Class 활동 도우미	20명 이내	연중	학기별 5시간 이내	김00 (Wee클래스)	담당학생
해피 프렌즈 도우미	해당 학급별 2~3명 이내	연중	학기별 5시간 이내	최00 (교무기획부)	담당학생	
캠페인 활동	학생 바른생활 실천 캠페인 활동	학생자치회 및 학생자치회 인턴	연중	학기별 5시간 이내	이00 (혁신자치교육부)	담당학생
	환경관련 캠페인 활동	환경 도우미 10명 이내	연중	학기별 3시간 이내	서00 (인성복지부)	담당학생
환경 보호 활동	특별실 분리수거	각 실별 2~4명 이내	연중	학기별 5시간 이내	박00 (인성복지부)	담당학생
	부모님과 함께하는 환경정화활동	희망 학생	연중	학기별 4시간 이내	박00 (인성복지부)	희망학생
	아침 학교 실내외정소	환경 도우미 24명 이내	연중	학기별 5시간 이내	서00 (인성복지부)	담당학생
	학교 분리수거	환경 도우미 10명 이내	연중	학기별 5시간 이내	김00 (인성복지부)	담당학생
	학급별 분리수거	학급별 2명 이내	연중	학기별 5시간 이내	해당 학년부 봉사담당자	담당학생

4. 학생봉사활동 활동 영역

가. 봉사 활동 절차

- 1)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승인자는 담임)
- 2) 담임교사의 봉사활동 사전교육 철저(봉사활동 추진위원회 협의사항)
- 3) 실행
- 4) 봉사활동확인서 제출
- 5) 봉사활동 누가 기록부 작성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나. 유의 사항

- 1) 연간 이수하여야할 봉사활동 시간 : 3년간 총 15시간으로 1학년 때 15시간을 모두 채울 수 있음 (2022년 고입전형요강기준)
- 2) 인정되지 않는 시간 : 수업시간이 6교시면 2시간 초과, 7교시면 1시간 초과, 4교시면 4시간(시험기간) 초과, 휴업일(공휴일)이면 8시간 초과한 경우
- 3) 3학년 (10월말)까지의 봉사시간만 고교 입시 내신 성적에 인정함.
- 4) 가급적 복지시설이나 관공서 봉사활동을 권장
- 5) 모든 봉사확인서는 관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내부 기안을 득한 교육지원청 행사는 봉사확인서에 직인 없이 담당자 실인만 득하여도 봉사활동 인정함.

다. 봉사활동 영역

활동	활동 목표	활동 내용(예시)
이웃돕기 활동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공동체 역량을 함양한다.	• 친구돕기활동-학습이 느린 친구 돕기, 장애 친구 돕기 등 • 지역사회활동-불우이웃 돕기, 난민 구호 활동, 복지시설 위문, 재능 기부 등
환경보호 활동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과 공공시설을 아끼는 마음을 기른다.	• 환경정화활동-깨끗한 환경 만들기, 공공시설물 보호, 문화재 보호, 지역 사회 가꾸기 등 • 자연보호활동-식목 활동, 자원 재활용, 저탄소 생활 습관화 등
캠페인 활동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기른다.	• 봉사활동 소양교육, 공공질서, 환경 보전, 헌혈, 각종 편견 극복 캠페인 활동 등 • 학교폭력 예방, 안전사고 예방, 성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 등

5. 봉사활동 내용별 인정 기준

가.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함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에 부합해야 봉사활동으로 인정

- 평일 인정 시간 :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 휴업일(토요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인정 시간: 8시간
- 1일 인정 8시간을 초과해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할 수 없음
- 다만, 헌혈은 1일 최대 봉사활동 인정 가능 시간(8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회당 4시간으로 당해 학년도 3회의 범위 내에서 실적으로 인정

○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

구분	출발	현장도착	준비 및 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휴식	현장출발	도착	귀가
인정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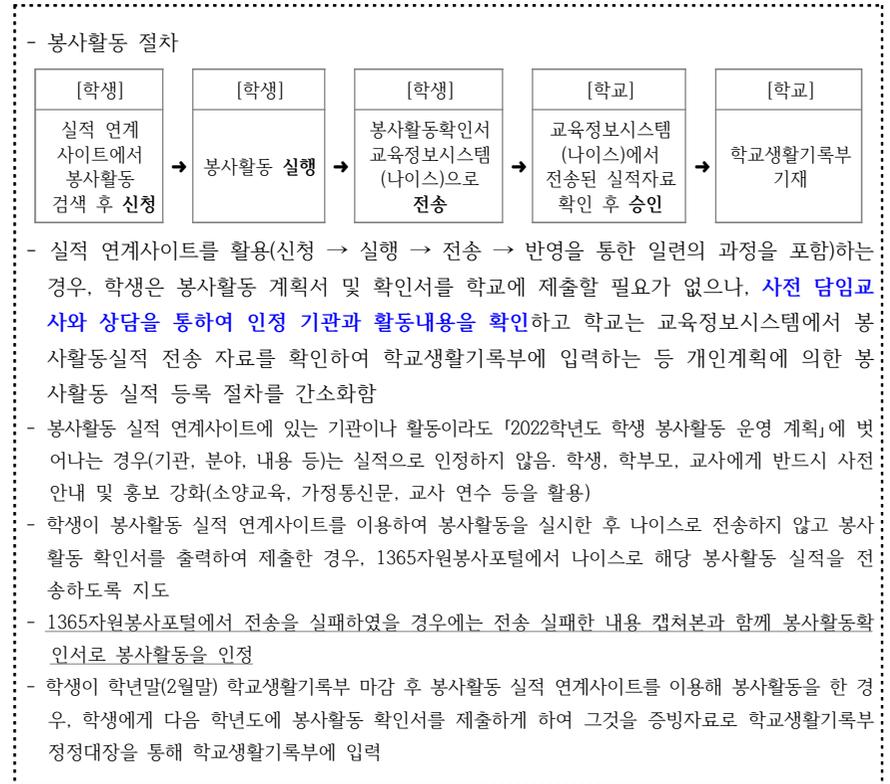
-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인정 불가하나 특별재난지역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음

○ 다음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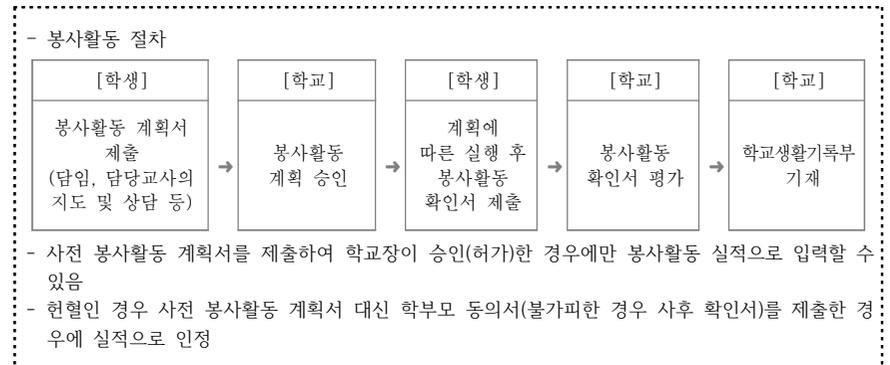
- 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 「소년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봉사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나.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는 경우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다.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이란 교내에서 학생이 자신의 흥미, 특기와 연계한 봉사활동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여 장기간 실시하는 것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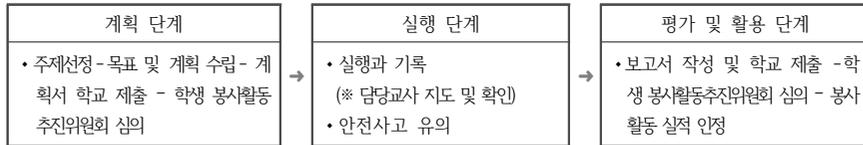
○ 구성원별 유형

- 개인형: 학생 개인이 자신의 흥미, 특기와 연계한 장기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 모듬형: 흥미, 특기가 비슷한 학생들이 모여 함께 장기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중·고등학교 권장)
- 융합형: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연합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내용, 대상 등을 결정하여 장기간 함께 실시하는 봉사활동(초등학교 권장)

○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의 진행 및 평가

- 기간: 학생의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되, 학기 단위 이상의 활동 권장
- 장소: 교내에서 학생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되, 프로젝트 봉사기간 동안 계획된 장소에서 활동
- 활동 내용: 학생의 흥미, 특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학생이 스스로 계획하되,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부합해야 함

- 절차



- 평가: 학년말(학기말)에 단위학교의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활동 보고서 평가 및 봉사활동 실시 확인서 발급, 학교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 실적 기록

○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 활성화 계획'을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권장

· 학교교육계획에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 반영하여 운영
예) 학년초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계획 수립 시 우리학교에 필요한 봉사활동을 발굴하고 봉사계획을 세워 실행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 추진 시 인정 기준, 절차 등 모든 사항은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준하여 실시
· 봉사활동 계획서 및 보고서는 <참고자료 4> 예시 서식을 참고하되, 학교 자체 양식 개발 활용

라. 봉사활동 인정기준 예시

◎ 학생의 모든 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과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해 인정함

1.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전송된 봉사활동의 인정
 -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을지라도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위반될 경우 인정 불가
 - 사전에 담임(담당)교사와 상담 등을 통하여 인정 기관, 활동내용 등에 대하여 확인 후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 실시
 - 수시로 봉사활동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
2.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에서 나이스로 연계된 봉사활동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방법
 - 봉사활동 내용이 너무 세부적이거나 간단한 경우, 입력되지 않은 채 전송된 경우 발생
 - 학생이 봉사기관에 봉사활동 확인서를 수정 요청하여, 수정된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고, 학교에서는 수정된 봉사활동 확인서를 근거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이미 나이스로 전송한 봉사활동 확인서를 수정해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나이스로 재전송하는 것은 시스템 상 불가하지만, 수정한 봉사활동 확인서를 출력하는 것은 가능)
 - 띄어쓰기 및 맞춤법 오류, , " (난해한 부호) 등은 수정한 봉사활동 확인서 없이 담임교사가 수정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에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 계획서 제출을 생략하는 것에 준하여 계획서 제출은 생략
3. 봉사활동 시간과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의 중복
 -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음
 - 학교교육계획에 의거하여 학교행사(현장학습,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후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 가능하나 중복 인정은 불가
예) 자율활동(체육대회)을 7시간 한 후 봉사활동을 2시간 실시하였다면 1일 8시간만 인정 가능하므로 1시간만 봉사활동으로 인정
 -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또한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음. 봉사동아리 부서에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할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 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 학생교육원 입소 시간, 교외체험학습 시간, 행사활동 시간, 동아리활동 시간 등과 봉사활동 시간의 중복은 인정 불가
 - 경기도교육청 학생교육원 리더십 배양과정의 교육과정상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 불가(리더십 배양과정 참가 내용은 자율활동 특기사항란에 입력)

4.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

-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에 대한 인정 기준은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에 근거함
-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실적 인정 가능 기관의 조건
 -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기관
 - 노인요양병원: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은 인정 가능,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은 인정 불가
 - 노인요양원: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시설은 인정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 불가(반드시 노인복지시설신고증 확인)
 - 병원: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이 운영하는 병·의원 등 각급 의료기관 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병원 내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팀) 등이 관리하는 병원)
- 봉사활동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활동영역, 내용, 안전 등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어긋나면 인정 불가

5. 민간기관·시설기관에서의 봉사

- 민간기관·시설기관의 봉사활동도 가능하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기관(단체)여야 하고, 활동영역 및 내용이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함

6. 봉사활동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 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교육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은 1시간 인정, 봉사활동 관련 단순 영상물 시청 등은 인정 불가
- **봉사활동과 연결되지 않는 교육, 회의 참석, 평가단 참여, 기자단 활동** 등은 인정 불가

7. 단순 물품 및 현금기부

- 단순 물품 및 현금의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음
 - 예) 현옷 모으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폐휴대폰 수거 등
- 단,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사전교육-캠페인-물품 및 현금 모금활동-기부-평가」의 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거나, 외부기관과 학교가 연계하여 담당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경우만 인정 가능함(학교에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함)

8. 물품 제작 관련 봉사활동

- 이웃돕기활동 또는 캠페인활동에서 학생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제작 봉사활동은 인정 가능(학교 연계는 필수 조건이 아님)
 - 예) 마스크 제작(캠페인활동), 목도리 제작(이웃돕기활동), 모자 뜨기(이웃돕기활동) 등
- 단, 봉사활동이 「사전교육-제작-평가」 등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야 하며, 물품 제작비 등의 학생 부담없이 학생들은 제작에만 참여한 경우에 한하며 실제로 참여한 활동 시간만을 인정함. 제작 후 학생이 가져가는 경우 인정 불가

9. 활동비를 내고 참여한 봉사활동

- 활동비를 요구하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 불가
- 어떠한 명칭이든 비용(금품)을 납부하고 참여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음(교통비, 식비, 재료비 등을 포함하며, 비용(금품)의 많고 적음과도 관계 없음)

10.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 **학교교육과정 내에 편성하거나** 교육과정 외 학교 자율로 편성한 봉사활동 모두 학교생활기록부 봉사활동실적란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봉사활동 확인서를 당해 학교장 명의로 발급**해야 함
- <참고자료 4> 봉사활동 각종 서식(예시) 참고

11.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기간 등의 출석 인정 결석기간에 실시한 봉사활동

-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기간 등 학교장 출석 인정 결석 기간의 봉사활동은 당일 수업시수와 봉사활동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내로 함
 - 예) 교외체험학습일에 봉사활동 8시간을 한 경우 봉사활동 당일 학교 수업이 7시간이면 봉사활동은 1시간만 인정함

12. 신입생의 입학 전(해당 학년도 3월 1일~입학식 전) 봉사활동 및 졸업생의 졸업 후(해당 학년도 졸업식 이후~2월말) 봉사활동 인정

- 해당 기간의 봉사활동 인정
-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3호에 학생이 재학 중 실시한 봉사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입학식 이전, 졸업식 이후라도 학년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입학식 이전의 봉사활동에 한해 사전계획서를 입학식 후 제출하여 사후 승인을 받음
 - 예) A중학교에서 B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된 경우 3월 1일에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B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A중학교의 졸업식 이후 2월말에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A중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함

13. 봉사활동 시간에서 분 단위 인정 여부

-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분 단위는 절사하여 입력함. 다만, 동일 기관의 같은 종류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경우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입력

14. 종업식 이후에 실시한 초등학교 1~5학년, 중학교 1~2학년의 봉사활동

- 재학생의(초등학교 1~5학년, 중·고등학교 1~2학년) 종업식 이후 2월 말까지 실시한 봉사활동

- 인정. 2월말까지는 당해 학년도에 해당하므로 당해 학년도 봉사활동으로 입력 가능함
-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이후의 봉사활동실적은 진급처리 이후 다음 학년도에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서 입력하되, 정정 전 반드시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증빙서류 첨부)를 먼저 거쳐야 함**
 - 종업식 이후, 다음 학년도 정정 등 행정적인 절차의 불편함을 이유로 학년말 봉사활동을 금지하거나 다음 학년도에 인정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15. 문화공연 준비
-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 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 연습시간은 인정
 - 공연 주체의 일상적인 공연 준비나 연습은 인정 불가
16. 행사 참여
-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 참여는 인정 불가
 - 정부·지자체 기념식 등의 공공행사에 단순 동원 형태의 참여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인정 불가
17. 번역
- **공익적 목적으로 공식적 요청을 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매당 또는 A4 1매를 1시간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생 본인이 직접 번역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경우만 인정할 수 있음**
 - '공식적 요청'이라 함은 학교에 요청한 공문,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활동 내용 등록, 공개된 홈페이지에 활동 내용 등록된 것 등을 의미
 - 번역료 등의 수당을 받으면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점자, 녹음 등 번역과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는 유사한 기준을 정하여 인정
18. 선플 달기
- 선플달기운동본부 <http://www.sunfull.or.kr>
 -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으로 '선플 달기' 작성 시 최대 12시간까지 봉사활동으로 인정
 - 초 40자 이상, 중 50자 이상, 고 60자 이상으로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
19. 학생이 실무담당자의 실인만 찍힌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의 인정 여부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지 않고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에 한함
 - 봉사활동 확인서는 기관장이나 단체장 명의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실무담당자의 실인도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실무담당자 실인으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담임교사 확인에 의해 봉사활동추진위원장 실인으로 조치할 수 있음

20. 개인계획에 의한 비대면 학생봉사활동 인정 기준
-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봉사활동 인정
 - 봉사활동이 「사전교육-실천-활동보고서 평가」 등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야 함
 - 학생 본인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했는지 주관기관이 확인(실시간 쌍방향, 영상 저장 등)한 경우 또는 봉사활동 실천과정의 사진(시작전, 실천, 결과)이 포함된 구체적인 활동보고서 제출 및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인정 가능
 - 실제 봉사활동한 시간만 인정하되, **학생 안전이 확보된 경우만 인정 가능**
 - 학교는 봉사활동 주관기관의 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통해 승인 또는 인정
21. 헌혈
- 만 16세 이상, 체중이 남자 50kg, 여자 45kg 이상인 경우 가능
 - 1회(전혈, 성분헌혈) 4시간 인정, 당해 학년도 **3회까지 인정**
 - 평일에 했을 경우, 수업시간과 상관없이(7교시, 8교시를 했더라도) 4시간 인정
 - 헌혈자 본인만 인정, 헌혈증서 양도 금지
 - 봉사활동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고, 학부모 동의서를 제출해야 실적 인정(불가피한 경우 사후 확인서 제출, 학생의 건강을 고려하며 무리한 헌혈봉사가 되지 않도록 함)
 - 학부모가 동의서(사후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학부모를 대리할 수 있는 보호자나 학생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단위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학생의 실정을 고려하여 승인 후 실적 인정 가능
 - 헌혈활동이 나눔과 배움을 실천하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실천적 봉사활동이라는 교육적 의미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22.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한 기타 사례
- 푸드마켓에 음식물 기부
 - 운동경기 또는 공연 관람
 - 문예작품(그림, 글짓기) 공모전 응모
 - 태극기 달고 인증샷 찍기
 - 인구조사 참여
 - 영재교육 과정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 결석생의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을 통해 학생을 동원하는 각종 행사
 - 모바일 광고 열람 및 인터넷 신규가입자 추천
 - 봉사활동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활동 참여
 - 해외에서 실시한 봉사활동과 해외 봉사활동을 위한 국내 사전, 사후 모임
 - 각종 행사의 단순 참여 활동(예: 각종 기념식 행사 참석 등)
 - 진로체험 관련 활동(예: 학생기자활동, 자치법정 등)
 - 각종 회의 및 토의 참석(예: 자치회의, 모의의회, 토론회, 평가단 등)
 -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TIMSS, ICILS 등)에 응시 학생 수행시간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미인정(※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4(2019.1.2.)호)
 -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활동

6. 주의 사항

- 가.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창의적체험활동 영역으로 실시하는 봉사활동으로서 학교의 연간 계획에 의해 추진하며, 학년, 학급 또는 그룹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다.
- 나. 개인별 봉사 활동은 담임교사가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확인서를 받는 것으로 한다.
- 다. 나눔포털 사이트를 통해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계획서와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나눔 포털에서 나이스로 봉사활동 기록이 전송되어 담임교사가 승인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 1) 나눔포털 실적 전송자료가 있는 경우, 사용자(담임교사 등)가 나이스에 로그인하면 업무요청 내역에 전송된 실적 정보가 조회된다.
 - 2) 나눔포털 실적 전송 자료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생이름 옆에 [*]표시가 부가되어 전송자료 유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
 - 3) 나눔포털 실적 전송자료를 학생별로 확인한다.
 - 4) 확인된 자료를 봉사활동 누가기록으로 일괄 반영한다.
- ※ 전송된 원본 자료는 수정할 수 없으며, 자료 확인 후 봉사활동 누가기록으로 반영한 이후에는 사용자(학급담임교사 등)가 수정할 수 있음.
- ※ 학생이 봉사활동 실적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중복 제출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전송자료를 우선 반영한 후, 중복 등 여부 등 확인함.
- ※ 봉사활동 누가기록으로 반영된 자료는 내용 및 시수를 교사가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 및 확인을 거쳐 저장된 기록은 자동으로 학생부에 반영됨.

7. 봉사활동 기관 안내

연번	기관명	장소	전화번호	소개
1	에덴복지재단	파주시 교하읍 신촌리	946-7030	작업보조, 장애인체험
2	파주경찰서	파주시 금촌동	943-2580	사무보조
3	교하지구대	교하읍 교하리	944-2112	서류정리
4	교하우체국	교하읍 교하리	943-2005	서류정리
5	파주우체국	파주시	941-2006	우편물정리
6	금촌소방서	파주시 금촌동	943-0119	청소,서류정리
7	파주시립도서관	파주시 금촌동	940-4381	청소 서류정리
8	홀트아동복지회	일산구 탄현동	914-6631	장애인 재활관 도우미
9	해냄공동체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962-4555	청소, 정리정돈
10	천사의 집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02-3159-8703	청소
11	운정역	운정역	946-0788	청소
12	박애원	고양시 일산구 설문동	977-5280	정신장애인 요양시설
13	일산경찰서	고양시 일산구	921-1120	청소, 서류정리
14	금촌역	파주시 금촌동	946-0788	구내환경정리
15	교하읍사무소	교하읍	940-8115	청소, 사무보조
16	고양세무서	고양시 일산구	900-9200	사무보조
17	꽃동네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인곡리 산 1-45	043-879-0402	식사준비, 청소
18	정발산역	지하철 정발산역	904-7799	청소
19	대화역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917-7799	청소
20	일산우체국	고양시 일산구	905-2012	우편물 구분 및 정리
21	고양YWCA	고양시	919-4040	일손돕기
21	고양YWCA	고양시	919-4040	일손돕기
22	청소년문화의집	문산읍 문산리 35-17	940-8440	일손돕기
23	건강보험공단	파주시 아동동	940-8481	사무보조
24	문산도서관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35-13	940-4382	서류정리

25	양지복지원	파주시 법원읍 금곡1리	959-5911	말벗도우미, 식사보조
26	에바다하우스	파주시 맥금동 426-5	945-0675	말벗도우미, 식사보조
27	정원치매센터	파주시광탄면 분수리 28-15	943-7001	말벗도우미, 식사보조
28	정원노인요양원	파주시광탄면 분수리 28-15	942-8887	말벗도우미, 식사보조
29	진인선원	파주시 파평면 놀노리 167-7	958-3043	말벗도우미, 식사보조
30	한나복지원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533	943-4766	말벗도우미, 식사보조
31	가없이좋은곳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428-1	958-7002	식사준비, 청소
32	해쳐림밥은곳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48-2	959-7008	식사준비, 청소
33	겨자씨사랑의집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 13-9	941-6004	식사준비, 청소
34	어유지동산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958-8593	식사준비, 청소
35	울타리공동체	파주시 조리읍 능안리 73	943-5209	식사준비, 청소
36	주보라의집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545	959-6114	식사준비, 청소
37	햇빛동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872-2	945-4300	청소, 서류정리
38	새꿈터	파주시 월롱면 위전4리 32-7	945-9156	장애인 재활관 도우미
40	장애인연합회	파주시 금촌동 108-64	944-9595	작업보조, 장애인체험
40	아들의집	파주시 조리를 장곡리205	941-8906	작업보조, 장애인체험
41	평화원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102	952-4553	작업보조, 장애인체험
42	테레사의 집	교하읍 다율리 58-7	946-8188	잡초제거 및 말벗
43	나운실버센터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1045-32	915-6090	청소도움 및 어르신 말벗
44	파주아름다운 요양원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107-14	946-5231	기타(시설봉사)
45	천사의 집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21-1	963-6506	장애우 식사도우미 등
46	전통연희축제조직 위원회	www.openpan.com	02-789-7871	체험부스 운영 및 안내
47	사단법인 청소년자연탐험연맹	www.tamhum.or.kr	02-525-1318	문화유전지 및 관광지 환경보호
48	바로교실 재활센터장	은평구 증한동 175-22	02-305-5180	주장 급식 준비, 배식, 설거지
49	민통선봉사단	-	02-3271-0542	민통선 지뢰피해 주민돕기
50	굿피플인터내셔널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0 굿피플 빌딩	02-783-2291	아프리카 후진국 주민돕기
51	서울 국제대회 위원회	서울 월드컵경기장	010-3810-1914	국제대회규모 행사지원
52	엄마손 밥상	파주교하 2단지 주민공동시설	02-816-1680	불우 맞벌이 부모 아동 급식 도우미
53	파주 북소리축제	파주출판단지	031-955-0079	북축제기간 행사도우미
54	대한장애인테니스 협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올림픽공원	02-424-5757	장애인아시아게임참가선수 도우미
55	더불어 사는 집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512번길 5	032-555-8636	장애인 말벗도우미, 학습도우미
56	프란치스코전교봉사 수녀회 우양의집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776-24번지	033-743-9781	어르신 말벗도우미, 어르신 식사보조

57	미래희망기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73 성원빌딩 3층	070-8280-1626	희망나눔 운동화 그리기행사 참여
58	사단법인주거복지 지원대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503 대방주공아파트 1단지 202호	02-816-1680	무료급식 배식도우미, 프로그램 도우미
59	가나안노인복지 원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등원로 359	031-947-2298	어르신 산책, 어르신 안마하기
60	청소년문화비전센 터	경기 파주시 연다산길 50	031-949-9182	꿈나무도서관 도서 정리 및 청소
61	은빛노인전문 요양원	경기도 파주시 파주로 266 아이비타워 5층	031-943-2232	어르신과 말벗도우미
62	사회복지시설노 인요양원한나의 집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로 229번길 31-18	031-962-6938	어르신 식사보조, 어르신 말벗도우미
63	일반시설노인요양 원 확인사항	*파주시청-분야별 정보-복지포털(하트모양 십자가 클릭)-복지시설(돌 보기 모양 클릭)-노인요양시설 클릭-노인요양시설 확인 가능 *인정 가능:어르신 안마도우미, 어르신 산책도우미, 식사보조, 어르신 말벗 도우미 등 *인정 불가 : 청소, 서류정리 등 '노인복지시설증'이 없는 시설 (위의 인정 가능 내용이라도 인정불가)		

※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 계획서 (개인형)						결재	담임	부장	교감	교장
프로젝트명										
인적사항						○○초·중·고등학교 ()학년 ()반 ()번 성명()				
활동 기간 및 시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일간, 총 ()시간				
주관 기관						예시) ○○초·중·고등학교				
봉사 장소						예시) 구체적인 장소				
활동 동기 및 활동 목표										
차시	활동일시(월/일)	봉사활동 영역	봉사활동 내용	봉사주관기관	봉사장소					
1										
2										
3										
4										
5										
6										
7										
8										
9										
10										
<p>위와 같이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p> <p>20 년 월 일</p> <p>학생 성명 : (서명)</p> <p>○○초·중·고등학교장 귀하</p>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 계획서 (모듬형·융합형)							결재	담임	부장	교감	교장	
프로젝트명												
인적사항							학 번	성 명	비 고	학 번	성 명	비 고
활동 기간 및 시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일간, 총 ()시간					
활동 동기 및 활동 목표												
차시	활동일시(월/일)	봉사활동 영역	봉사활동 내용		봉사주관기관	봉사장소						
1												
2												
3												
4												
5												
6												
7												
8												
9												
10												
<p>위와 같이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p> <p>20 년 월 일</p> <p>대표학생 성명 : (인)</p> <p>○○중·고등학교장 귀하</p>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 운영 보고서

프로젝트명			
인적사항	()학년 ()반 ()번 성명()		
활동 내용	활동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 총 ()시간	
	○ 20 년 월 일 15:00~16:00 • 장소: ○○학교 학생 자치회실 • 내용 - -		
	○ 20 년 월 일 16:00~17:00 • 장소: ○○학교 운동장 • 내용 - -		
	○ 20 년 월 일 15:00~16:00 • 장소: ○○학교 2층 복도 • 내용 - -		
	<i>활동 사진</i>	<i>활동 사진</i>	<i>활동 사진</i>
<i>사진 내용 설명</i>			
실천 결과 및 느낀점	○ 실천 결과 - <실천 결과 작성> - - ○ 실천 후 느낀점 - <느낀점 작성> - -		